

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#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1년 1월 11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2일

3. 제안이유

- 예술인은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.
- 「예술인 복지법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예술인에 대한 처우가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음.
-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,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.

4. 주요내용

- 예술인에 대한 정의(안 제2조)
- 도지사의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명시(안 제3조)
-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(안 제4조)

- 예술인의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5조)
- 예술인 복지증진 자문·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(안 제6조)
- 예술인 창작공간의 지원, 예술활동 후원, 재정지원(안 제7조부터 제9조)

## 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온 예술인에게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,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북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에서는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,
  - 안 제3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,
  -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, 교육 및 훈련, 피해구제 지원 등 사업 유형을,
  - 안 제5조에서는 주요 시책 마련을 위한 예술인 창작환경 실태 조사를,
  -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자문·심의 사항을 명시하였고,
  -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술인 창작공간의 지원, 예술활동 후원,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 조례안은 「예술인 복지법」이 제정, 시행됨에 따라 법적근

거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,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를 안정화하여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한 문화예술 영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. 끝.